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3. 11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6명(박정환, 장호섭, 황국주, 김정희, 박종길, 남현주)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3. 11.)

2. 개정이유

- 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1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6항)
- 나.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5. 2. 26. ~ 2025. 3. 9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지정한 ‘금주 구역’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,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화합 및 소통을 위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음주 가능시간 및 장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